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	2002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에서 지출한 예비비의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805,813천원으로 중앙시장화재 이재민재해보상금 지급 사업 등 총 6건에 663,72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37,6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6,129천원은 불용액임 - 지출결정액 : 총 6건 663,729천원 - 지 출 액 : 총 6건 637,600천원 - 불 용 액 : 26,129천원	회 계 과	각상임위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제안이유 2002. 12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표준안 시달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에의 가입 의무를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근거마련 -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함(제3조) - 인감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보험가입금액은 최소 1억원이상으로 규정함(제3조)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에 가입함으로서 인감사고 피해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부담경감(제5조)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3	성남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지난 1999년 11월 통·반 구조조정(대통제 운영)과 함께 단행된 통장의 임기·연령 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평등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일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통장위촉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 · 아울러 수정구 복정동, 중원구 은행2동, 분당구 수내2동·정자1동·이매1동·야탑1동·야탑3동·금곡동·구미동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반장 위촉방법도 통장과 동일하게 동장에게 일임(안 제5조3항) · 통·반장의 자격 중 연령제한을 30세이상 65세이하로 함(안 조례제6조제1항제4호) ·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하며 위촉장 재교부 조항삭제(안 조례제7조) · 부칙 제2조 삭제 및 기존통장 임기를 개정조례에 의하도록 명문화 (안 부칙제2조) · 수정구 복정동, 중원구 은행2동, 분당구 수내2동·정자1동·이매1동·야탑1동·야탑3동·금곡동·구미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안 제4조 별표) ※ 시전체 1,062통 6,324반 ⇒ 1,099통 6,564반으로 37통 240반 증가	총 무 과	자치행정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4	성남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2003년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그간의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기구를 전면 개편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 본청 : 5국 2담당관 21과 → 5국 2담당관 22과 · 국 단위 · 경제통상국 → 재정경제국 명칭변경 · 과 단위 · 행정국 시민봉사과 폐지 → 자치행정과 신설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폐지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신설 ·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 문화복지국 여성지원과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체육청소년과 · 문화복지국 위생과 → 환경위생과 · 건설교통국 재난재해관리과 → 방재과 ○ 사업소 : 7사업소 9과 → 6사업소 10과 · 디자인자원사업소 폐지 → 도시정비사업소 탄천관리과 신설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 수도행정과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수도시설과 ·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 환경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 도시주택국 녹지과 ○ 구 청 : 8과 → 7과 · 주민자치과 폐지 → 하수처리과(정원신설) ○ 동 : 44개동(현행유지)	총 무 과	자치행정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5	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와 기능전환업무 담당부서 신설로 인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 정 원 : 2,196 → 2,199명(증3) · 집행기관의 정원 : 2,166명 → 2,169명(증3) · 의회사무국의 정원 : 30명(변동없음) ○ 정원 조정내역 (단위:명) <table> <tr> <th rowspan="2">계</th> <th colspan="4">일 반 직</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소계</th> <th>5급</th> <th>6급</th> <th>9급</th> </tr> <tr> <td>3</td> <td>3</td> <td>△2</td> <td>3</td> <td>2</td> <td></td> </tr> </table> ※본청 : 자치행정과 신설(5급 증1, 세무9급 △1) 2004. 6. 30 한시기구	계	일 반 직				비고	소계	5급	6급	9급	3	3	△2	3	2		총 무 과	자치행정
계	일 반 직				비고															
	소계	5급	6급	9급																
3	3	△2	3	2																
6	성남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이 가능한 대부·매각 가능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산업단지등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포함 (안 제19조3 제6항).	회 계 과	경제환경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7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 제안이유 ·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도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등에 1회이상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관계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7조) ·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반영기준을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검사 포함)내용의 적정성,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여부, 기존의 용도지역 등과의 조화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수용능력, 환경훼손 여부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8조)	도 시 과	도시건설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토지 중 지목이 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으로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의 기준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내지 제27조)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및 경사도 기준 등을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각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안 제32조 내지 제47조)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취락지구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정하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와 기타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8조 내지 제65조) · 건폐율은 제1종·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70%, 중심·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0%, 전용·일반·준공업지역 70%,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20%, 자연취락지구 40%,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70%이하로 정함(안 제66조) · 용적률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80%,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600%, 유통상업지역 600%,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보전녹지지역 60%, 생산녹지지역 50%, 자연녹지지역 80%,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이하로 정함(안 제67조) · 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정함(안 부칙 제3조 내지 제6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8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의 개정(2000.1.28)으로 2002.1.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임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를 총괄 관리부서로 규정(제2조) · 특별회계의 재원을 타 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잉여금, 정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채권발행 등으로 충당토록 규정(제3조) · 지출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채권의 상환과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규정(제4조)	도 시 과	도시건설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9	성남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의 개정준칙(2002. 11.15)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안 제7조)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 (안 제14조 개정) ·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운영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하는 근거와 대행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내지 제4항)	청 소 과	경제환경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10	성남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령” 개정(2002.2.4)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제224호-’03.1.20)개정에 따라,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일부 적용법률조항 변경 및 변경된 조항 내용 개정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률조항 정리 (안 제3조내지 5조) · 제4조중의 조명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를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로 개정 사업자의 의무사항 용어정리(안 제4조)	청 소 과	경제환경
11	성남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령” 개정(2002.2.4)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제224호-’03.1.20)개정에 따라,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1회용품 무상제공, 분리배출표시 미이행, 회수의무 미이행 및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 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의 추가 및 적용법률조항 변경내용 개정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으로 적용법률조항 정리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과태료부과 품목 추가	청 소 과	경제환경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2	성남시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운영 관리사무의민간 위탁동의안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도 과태료부과기준 추가 신설 및 1,000제곱미터이상 1차 위반시 도·소매업의 과태료부과금액 조정 · 체육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 응원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 대규모점포 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시 과태료부과기준 추가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포장용기 제조자에게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은 도·소매 및 제조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전문성이 확보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 대상 · 시설명 :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 위 치 : 분당구 서현동 312-5번지의외 1필지 · 시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 부지면적 : 1,600㎡ 건축연면적 : 4,707㎡	문화체육과	사회복지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사업내용 :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법규에 정한 청소년육성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제한공개경쟁 모집 · 주요 협약내용 · 위탁관리대상 : 부지 및 시설물(안 제2조) · 위·수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안 제3조) · 재산관리 (안 제4조) · 위탁운영관리비용 부담(안 제8조) · 사용료 징수(안 제12조) · 협약의 효력(안 제19조) · 관리위탁의 해지사유(안 제12조) · 위탁시설물의 반환(안 제13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13	성남시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각종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9조)	기획예산과	자치행정
14	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생활보호법 법률폐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1999. 9. 7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명칭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거주 등록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 주요골자 ○ 수수료면제(제7조제1항)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안 제7조제1항제1호)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안 제7조제1항제5호)	세 정 과	경제환경